

2025년 제3회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공연장안내원 채용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 등 공개

지방출자·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「2025 제3회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공연장안내원 채용」 응시
현황 및 채용과정을 공개합니다.

1. 채용전형별 진행일정

공고일	원서접수	1차 전형		2차 전형	최종합격자 발 표
		서류전형	합격자발표	면접전형	
25. 7. 9.(수)	25. 7. 11.(금)~ 7. 24.(목)	25. 7. 28.(월)	25. 7. 30.(수)	2024. 8. 4.(월)	2025. 8. 6.(수)

2. 전형별 응시현황 및 채용과정

채용 구분	채용분야	채용인원	접수인원	경쟁률	서류전형		면접전형		최종 합격	예비 합격
					합격인원	합격선	합격인원	합격선		
합	계	7명	5명	-	5명	-	4명	-	4명	-
공개 경쟁	공연장 안내원	7명	5명	0.7:1	5명	-	4명	82	4명	-

3. 전형단계 및 전형단계별 채용절차

전형단계															
서류심사 ▶ 면접심사 ▶ 최종합격															
전형단계	심사기준														
서류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사내용 : 채용분야 자격기준 적격 심사 ○ 합격기준 : 자격기준 적격자 														
면접심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사대상 : 서류심사 합격자 ○ 심사내용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thead> <tr> <th>평정요소</th> <th>배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점</td> </tr> <tr> <td>구성원과의 결합력 및 정신자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점</td> </tr> <tr> <td>전문지식 경험과 그 응용능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점</td> </tr> <tr> <td>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점</td> </tr> <tr> <td>예의·품행 및 성실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점</td> </tr> <tr> <td>의지력 및 업무적합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○ 합격기준 :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	평정요소	배점	계	100점	구성원과의 결합력 및 정신자세	20점	전문지식 경험과 그 응용능력	20점	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20점	예의·품행 및 성실성	20점	의지력 및 업무적합성	20점
평정요소	배점														
계	100점														
구성원과의 결합력 및 정신자세	20점														
전문지식 경험과 그 응용능력	20점														
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20점														
예의·품행 및 성실성	20점														
의지력 및 업무적합성	20점														
최종합격	○ 면접심사점수 최고점 획득자 순으로 선발														

< 「(재)화성시문화재단 취업규정」 제10조(결격사유) >

- ① 미성년자 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⑧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
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 청소년 대상 성범죄
- ⑩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